

# 한 국 관 광 협 회 중 앙 회

## KOREA TOURISM ASSOCIATION

(03149)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,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, 전화 : 02-757-7485, 전송 : 02-757-7489  
 기획협력국 국장 이승택 팀장 권효재 사원 이지현 kta7485@naver.com

문서번호	기획 2022-86	선람		지시	
시행일자	2022.03.04.	접수	일자	결	
경 유			시간		
수 신	수신처 참조	번호	처리과	람	
참 조		담당자			
제 목	2022년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				

1.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(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)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**‘2022년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**을 위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, 2분기에도 특례적용호텔 지정유지를 원하는 호텔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**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**

- 지정기간 : ‘22년 2분기 (2022.04.01.(금) ~ 06.30.(목))
- 신청기간 : 2022.03.07.(월) ~ 03.25.(금)
- 접 수 처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, 한국호텔업협회
- 참고사항

- 가격인상 제약요건 : 2018 ~ 2021년 중 1개 연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%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
※ 특례 적용 기준기간을 전년 또는 전전연도에서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 (2022년 한정)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예정 (‘22.04.01.)
- ‘22년 1분기 지정 호텔도 ‘22년 2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
-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제도가 ‘22.12.31.까지 2년 연장  
※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2.12.31.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(20.12.02. 국회 의결) ‘21.01.01.시행

-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

**관련문의**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(02-2079-2426, 2464)

붙 임 : 2022년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문(양식포함) 1부. 끝

한 국 관 광 협 회 중 앙 회  
 회 장 윤 영



수 신 처 : 지역관광협회